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665호 2022. 4. 4.(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18호 분묘개장공고(2차)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23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고 ————— 6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4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과량로 14-6 외 2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4.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2-4-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24-11	인천광역시 서구 파평로 14-6 (원창동)	20090922	옛날 청라도가 파평으로 불려, 이 명칭을 따 파평로로 명명	
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06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1577-3 (금곡동)	20090706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천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3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37-33 (불로동)	20090710	검단이 '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80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8 (심곡동)	20090922	서쪽으로 깊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보건소신별진료소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98-1	인천광역시 서구 청단기술로 50 (청라동)	20191223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착안	
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515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10번길 27-2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514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10번길 27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920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44-20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927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44-26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926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44-22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925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44-18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924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44-30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923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44-14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922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44-28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921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44-24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919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44-16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315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44-10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918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44-12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겸암동 602-13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83번길 18-6 (겸암동)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1-1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542번길 21 (가좌동)	20121025	염곡로 시작지점부터 5,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3-6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93번길 8-20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22	인천광역시 서구 겸암동 602-5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83번길 18-8 (겸암동)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8-2	인천광역시 서구 독정로 26-17 (백석동)	20110707	인근 자연부락인 '독정마을'의 이름을 반영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2-4-4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73 (심곡동)	건축과-12278(2022.3.28.)호에 의거	20090922	심곡동의 동명을 따서 명명	
2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36번길 12-1 (석남동)	건축과-12282(2022.03.28.)호에 의거	20090922	율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36번길 12 (석남동)	건축과-12284(2022.03.28.) 호에 의거	20090922	율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10번길 19 (검암동)	건축과-12009(2022.03.25)호에 의거	20090922	검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618호

분묘개장공고(2차)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원신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2. 4.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분묘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산34-5, 원창동 산59-2, 원창동 산64-4
2. 분묘기수: 5기
3. 개장사유: 원신공원 조성사업에 편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 후 안치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인천가족공원)

6. **안치기간:** 봉안 후 10년
7. **광고기간:** 최초광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9. **신 고 처**
 -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94, 4층 405호(청라빌딩))(☎ 032-569-7566~8)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032-560-4494)
10.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사진 촬영)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족보, 인감 증명, 사실확인 서류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분묘개장광고 후 개장과정에서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분묘의 광고는 본 광고로 같음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623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결을 얻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감면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감면대상자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약정 포함)한 건물주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 감면세목 : 재산세(건축물, 토지)
- 3. 감면내용 : 2022년 7월·9월 부과분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① (감면 내용)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건축물(그 부속토지 포함) 소유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축물과 토지(「지방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로 소상공인이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2022년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을 포함한다)를 제1호 및 제2호의 산출식과 적용요령에 따라 감면한다.

1. 재산세 감면세액 산출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7월·9월 정기분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출한 세목별 세액 감면

※ 7월 정기분(건축물) 부과세액보다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 후, 나머지 인하금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감면

2. 적용요령

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란 2022년도 월임대료 인하액 중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감면대상금액)를 말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으로 한다.

나.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 합계금액을 3개월로 환산한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대상금액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으로 한다.

다. 감면세액은 가목과 나목의 감면대상금액을 7월과 9월 정기분 부과액 중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출하여 산출된 재산세액을 감면한다[(7월 정기분(건축물)부터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공제 후, 나머지 인하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공제].

라. 일부 임대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건축물과 토지별로 전체 시가표준액 중 해당 임대부분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세목별 세액을 다목과 같이 산출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마. 감면대상금액과 감면세액은 임대차계약별(물건별)로 산정한

다.

- ② (감면 배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감면 신청) 임대료 인하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④ (추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 인하, 인하 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상이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임대계약 및 임대료 인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는 경우
- ⑤ (감면 특례) 이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감면 적용례) 이 감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차인과 변경 임대차 약정을 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